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5년 12월 15일

권유자: 성명: 주식회사 에코글로우
주소: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둔유2로 14-1, 씨동
전화번호: 031-954-9830

작성자: 성명: 양호준
부서 및 직위: 경영지원실 이사
전화번호: 070-5073-490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가. 권유자	(주)에코글로우	나. 회사와의 관계	본인
다. 주총 소집공고일	2025년 12월 15일	라. 주주총회일	2025년 12월 31일
마. 권유 시작일	2025년 12월 17일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위탁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가. 권유취지	가. 권유취지		
나. 전자위임장 여부	해당사항 없음	(관리기관)	-
(인터넷 주소)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해당사항 없음	(전자투표 관리기관)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영업의전부또는중요한일부의양도가거나다른회사의영업전부			
☐ 정관의변경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주)에코글로우	보통주	232,588	0.44	본인	자기주식은 상 법 제369조에 의거 의결권이 없음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권유자와의 관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 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주)더편한	최대주주	보통주	12,135,922	23.19	최대주주	-
계		-	12,135,922	23.19	-	-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 주식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양호준	보통주	0	직원	-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구분	주식의 종류	주식 소유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주)래리파트너스	법인	보통주	0	없음	없음	-
(주)위스컴퍼니	법인	보통주	0	없음	없음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이 법인인 경우】

[주식회사 래리파트너스]

법인명	대표자	소재지	위탁범위	연락처
주식회사 래리파트너스]	이안심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로	의결권 위임 권유대 행 및 위임장 수거	010-8286-5621

[주식회사 위스컴퍼니]

법인명	대표자	소재지	위탁범위	연락처
주식회사 위스컴퍼니	위성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의결권 위임 권유대 행 및 위임장 수거	031-714-7009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권유 시작일	권유 종료일	주주총회일
2025년 12월 15일	2025년 12월 17일	2025년 12월 30일	2025년 12월 31일

나. 피권유자의 범위

2025년 12월 08일 기준일 현재 의결권 있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 전원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주주총회 의결 정족수 확보 및 원활한 주주총회 진행을 위하여 의결권을 위임 받고자 합니다.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O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X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O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X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X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홈페이지 명칭	인터넷 주소	비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에코글로우 홈페이지	http://dart.fss.or.kr/ http://ecoglowkc.co.kr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공시 참조 IR->IR정보 게시판 참조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위임장 접수처

-주소 :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돈유2로 14-1, 3층 (우:10832)

-전화 : 070-5073-4910

-팩스 : 02-545-8187

-우편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접수 가능

-접수기간 : 2025년 12월 17일(수) ~ 2025년 12월 30일(화) 오후 7시까지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해당사항 없음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2025년 12월 31일 오전 9 시
장 소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돈유2로 14-1, 본사 1층 회의실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전자투표 기간	-
전자투표 관리기관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서면투표 기간	-
서면투표 방법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해당사항없음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이거나 다른회사의 영업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

가. 영업양수도 상대방의 주소, 성명(상호) 및 대표자

성명(상호)	대표자	주 소	비고
(주)제이케이아이	강종구, 박성재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1로 13	-

- 1) 양수영업 : (주)제이케이아이의 반도체 검사장비 사업부문 전체
- 2) 양수영업 주요 내용 : 반도체 검사 장비 제조 납품
- 3) 양수가액 : 금 백억원정 (₩ 10,000,000,000)
- 4) 양수목적 : 사업 포트폴리오 확장을 통한 장기적 성장 및 안정적 수익 확보
- 5) 양수영향 : 장비 수주사업의 진출 등에 따른 매출 및 수익 구조 다변화
주기적 매출 사이클을 통한 안정적 현금흐름 확보
- 6) 양수관련 주요일정

일자	주요내용
2025.05.28	영업양수도 계약 체결 / 이사회 승인 /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2025.12.08	주주명부 확정 기준일
2025.12.15	임시주주총회 소집공고
2025.12.16 ~ 2025.12.30	반대의사표시 접수 기간
2025.12.31	임시주주총회 개최
2026.01.01 ~ 2026.01.20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 기간

7)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① 외부평가기관 : 한빛회계법인

② 외부평가기간 : 2025년 10월 29일 ~ 2025년 11월 21일

③ 외부평가 근거 및 사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6 제3항에 의한 적정성 평가

④ 외부평가의견 : 당 법인의 분석에 기초한 결과, 평가기준일 현재 평가대상사업부의 평가액은 9,388백만원에서 10,883백만원의 범위(가중평균자본비용 13.75% ~ 15.75%, 영구성장률 -0.5% ~ 0.5%)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실제 양도 예정가액은 10,000백만원으로, 평가기준일 현재 현금흐름할인법으로 평가한 상기 평가금액 범위를 고려할 때, 중요성의 관점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가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8)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① 행사요건

상법 제374조의2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따라, 주주명부 확정 기준일 현재 당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까지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 한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주주명부 확정 기준일부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보유한 주식에 한함)에 대하여 회사에게 주주총회 결의일 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소유 주식 중 일부에 대한 매수청구도 가능합니다.

단,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주명부 확정 기준일로부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 한하여 계속 보유한 주식에 대하여만 부여되며, 동 기간내 매각 후 재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상실되고,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전에 서면으로 영업양수의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영업양수에 찬성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영업양수 회사인 당사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상장법인이므로, 그 청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주식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② 매수예정가격

(1) 협의를 위한 회사의 제시가격

「상법」 제374조의2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따라 청구되는 주식의 매수가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 제1호에 따라 영업양수 관련 이사회결의일 전일부터 과거2개월간(같은 기간 중 배당락 또는 권리락으로 인하여 매매기준가격의 조정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는 날부터 이사회결의일 전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 과거 1개월간(같은 기간 중 배당락 또는 권리락으로 인하여 매매기준가격의 조정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는 날부터 이사회결의일 전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 및 과거 1주일간 공표된 매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을 실물거래에 의한 거래량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격을 다시 산술평균하여 산정된 가격으로 합니다.

일자	종가	거래량	거래대금
2025/11/20	711	588,735	422,615,247
2025/11/19	722	1,442,376	1,056,402,265
2025/11/18	770	1,435,463	1,125,046,054
2025/11/17	803	3,280,408	2,732,743,521
2025/11/14	917	15,095,304	14,209,101,441
2025/11/13	881	13,781,953	13,624,744,196
2025/11/12	894	14,528,272	12,133,099,628
2025/11/11	688	14,191,362	10,380,676,134
2025/11/10	630	13,667,322	9,966,230,121

2025/11/07	581	101,011	58,534,954
2025/11/06	581	67,873	39,961,729
2025/11/05	585	98,093	56,576,633
2025/11/04	584	203,132	119,316,625
2025/11/03	568	383,752	223,243,115
2025/10/31	597	86,297	52,124,719
2025/10/30	603	119,046	71,258,456
2025/10/29	600	127,857	77,057,698
2025/10/28	606	117,736	71,479,998
2025/10/27	610	253,253	152,496,941
2025/10/24	604	181,951	110,290,062
2025/10/23	608	64,243	39,183,785
2025/10/22	615	80,417	48,960,037
2025/10/21	611	842,718	537,849,786
2025/10/20	607	142,670	86,841,840
2025/10/17	602	87,455	52,467,855
2025/10/16	601	258,125	156,212,089
2025/10/15	618	106,448	65,815,147
2025/10/14	621	136,924	84,587,165
2025/10/13	629	108,920	68,359,026
2025/10/10	615	213,391	132,831,181
2025/10/02	614	186,497	114,080,239
2025/10/01	623	167,224	104,686,013
2025/09/30	628	217,287	136,904,014
2025/09/29	640	550,324	351,961,435
2025/09/26	650	490,865	329,236,334
2025/09/25	715	2,204,534	1,574,062,210
2025/09/24	713	5,096,395	3,901,908,525
2025/09/23	791	9,452,654	7,319,951,641

2025/09/22	609	200,017	125,877,871
① 2개월 가중산술평균종가			816
② 1개월 가중산술평균종가			834
③ 1주일 가중산술평균종가			895
산술평균 = (①+②+③)/3			848

(2)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 처리방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규정에 따라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으로 하며, 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그 매수가격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주식매수가격 및 매수청구권 행사에 관한 사항은 필요시 주주와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상기 영업양수 일정 등 주요조건은 공시시점 현재 상태이며 관계법령, 법원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승인등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③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1) 반대의사 표시 방법

상법 제374조의2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주명부 확정 기준일 현재 당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단, 통지일까지 주식을 계속 보유한 경우에 한함)로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까지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영업양수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단, 주권을 증권회사(금융투자업자)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에 주주총회일 3영업일 전일까지 통지하여야 하고, 증권회사에서는 실질주주의 반대의사 표시를 취합하여 주주총회일 2영업일 전까지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주주총회일 전에 실질주주를 대신하여 회사에 반대 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2) 매수청구 방법

상법 제374조의2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영업양수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주주명부 확정 기준일부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보유한 주식에 한함)를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주권을 증권회사(금융투자업자)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해당 증권회사에 위탁 보유하고 있는 주식수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일의 1영업일전까지 당해 증권회사에 제출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이를 대신 신청합니다.

(3) 행사 기간

- 주주명부 확정 기준일 : 2025년 12월 08일
- 영업양수 반대의사표시 접수 : 2025년 12월 16일 ~ 2025년 12월 30일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 2026년 01월 01일 ~ 2026년 01월 20일

(4) 행사 장소

- 명부주주 :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돈유2로 14-1, (주)에코글로우 경영기획실
- 실질주주 : 해당거래 증권회사

(5)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상법 제374조의2에 따라 영업양수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수하여 줄 것을 해당 법인에 대하여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주식매수청구권 대상 주식은 주주명부 확정 기준일부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보유한 주식에 한합니다.

(6) 계약에 미치는 효력

본 영업양수는 당사의 주주총회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별도의 통지 없이 그 즉시

본 계약은 해제됩니다. 또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금액의 총액이 금 30억을 초과하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한 서면통지로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 영업양수도 상대방과의 사이에 가지고 있거나 있었던 이해관계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99. 위 각호 부대사업 및 기타 회사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99. 반도체 검사장비 제조 판매 및 수출입업 100. 반도체장비의 도소매, 중개 및 위탁판매업 101. 반도체 임가공 서비스 및 제조업 102. 반도체 제품 검사업 103. 장비부품 도, 소매업 104. 위 각호 부대사업 및 기타 회사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사업 다각화 및 양수 사업 부문 고도화 조문번호 변경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